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22. 2. 23.(수) / 총 8매(본문3, 참고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김은정, 사무관 김태홍</li> <li>• ☎ (044) 201-3855, 3858</li> </ul>	
		환 경 부 교통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황인목, 사무관 홍강민</li> <li>• ☎ (044) 201-6920, 6928</li> </ul>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장 김용달, 차장 김창국</li> <li>• ☎ (054) 440-3010, 3015</li> </ul>		
보 도 일 시		2022년 2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 국토부 · 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 · 검사생략 등 25곳 적발
- 상시 적발체계 운영 ·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774여 곳)

-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목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

□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21년 하반기	187	25 (13.4%)	25	25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19년 상반기	271	47 (17.3%)	47	46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5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외관·기능 검사 일부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11	44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9	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측정기 스캔 미교정, 표준가스 교정 불량	3	12
시설·장비기준 미달	영상촬영장치(카메라) 불량	1	4
검사결과 조치 불량	검사결과표 미교부 및 후퇴등 미조치	1	4

○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종합검사소(적발/점검) 12.7%(15곳/118곳), 정기검사소 14.4%(10곳/69곳)

\*\*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 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 무자격자 검사시 2차, 다른사람 명의 검사시 3차 적발시 지정취소 → 적발 즉시 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기계·기구 설정값 조작시 업무정지 30일 → 60일로 대폭 강화

○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 □ 검사종류

검사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 검사주기

#### ○ 정기검사

구 분		검 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 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참고 2**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1.12월 기준)**

구 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계	종합검사	정기검사
계	1,774	1,329	445
서울	58	57	1
부산	79	79	0
대구	72	72	0
인천	65	64	1
광주	50	50	0
대전	42	42	0
울산	48	48	0
경기	393	375	18
강원	100	7	93
충북	87	69	18
충남	132	124	8
전북	8	8	0
전남	111	59	52
경북	130	61	69
경남	182	101	81
제주	168	113	55